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Price Escalation Clause of Letter of Credit

박세운(Sae-Woon Park)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신용장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의의	참고문헌
III. 판례 분석	ABSTRACT
IV. 시사점	

국문초록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주제어 : 에스컬레이션 조항, 원유가격변동 조항, 비서류적 조건, 초과발행

I. 서론

어떤 시기에는 통화간의 연결(예컨대 달러 대 일본 엔화 캐리 트레이드)과 상품간의 연결(예컨대 달러/금/원유)이 왜곡되어 근본적 기초거래와 상품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의 역학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상품시장 참가자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변동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격변동은 공산품에 비하여 원유 또는 금속과 같은 1차 상품이 크다. 원유 또는 금속거래에 서는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s)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유거래에서는 원유가격변동조항(oil fluctuation clause)이 기재된다. 운송업계에서는 원유가격이 급등하면 추가운임(surcharge)을 받는다는 Bunker Adjustment Factor를 운송약관에 기재하여 원유가격이 급등할 때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추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원유가격변동조항이 있는 신용장에서 원유가격이 상승된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조항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무시할 수 있다면 수익자는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이 비서류적 조건이기는 하나 명백한 조건으로 보고 무시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유가격변동조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은행이 관련된 2개의 판결이 2005년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나왔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 분쟁조정기구의 하나인 DOCDEX에서도 이와 관련된 결정 5건(238, 243, 244, 248, 255)이 나왔다. 이 결정은 모두 우리나라 은행이 개설은행인 사건으로 개설은행은 각기 다르나 개설의뢰인은 모두 같다.

판례와 DOCDEX 결정에서는 모두 원유가격변동조항이 비서류적 조건이기는 하나, 이 조건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신용장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수익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이 판례가 신용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나¹⁾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박세운과 최장우(2011)의 연구에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판례의 하나로서 분석되었을 뿐 심도 있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다.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강원진·

1) 이 사건이 전세계적으로 신용장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미국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에 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webinar(2006년 2월 8일)를 하고 이것의 내용을 DVD로도 발행하였고, 이 webinar는 www.iiblp.or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김동윤, 2007, 남풍우·한상현 2003, 이상훈 2005, 석광현 2004, 이대우 2007, 김선국 2000, 서백현 2002)에서는 이 사건이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유가격변동조항과 같은 에스컬레이션조항의 신용장조건으로서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2005년 11월 29일자 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과 Standard Chartered Bank간의 관련 판례와 DOCDEX 결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로 한다.

II. 신용장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의의

1. 에스컬레이션 조항

신용장에서 에스컬레이션조항의 목적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가격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외부가격 결정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디에스컬레이션조항(de-escalation clause 또는 reduction clause)이다. 이와 같은 문구는 원유나 금속거래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가격은 어떤 기간 동안(보통 선하증권일자와 연계된다)의 관련 금속의 LME(London Metal Exchange)가격에 따라 단가가 변동된다. 이것을 "wrap around"라고 부른다. 그 기간은 선하증권일자로부터 3일 또는 3주간이나, 선적월 또는 선적 전과 후의 달이 된다. 원유제품에서는 Platts, ICIS 또는 Argus와 같은 상호 인정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제3자가 발행하는 가격 중 하나 또는 둘이상의 가격을 사용하여 결정되며 "wrap around"와 유사하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조항은 예컨대, "The value of this L/C is increased or de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price formula evidenced herein without any further amendment hereto being required."와 같이 기재된다.

매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에스컬레이션조항은 CIF 가격을 정하면서 운임 또는 보험료가 가격제시시점과 물품인도시점 간에 인상되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거나 혹은 환율변동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²⁾

2) Carole Murray, David Holloway and Daren Timson-hunt, Schmitthoff's Export Trade, Sweet & Maxwell, 2007, p.842.

2.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로 조건 이행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³⁾

에스컬레이션조항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된다. 신용장에 비서류적 조건이 있으면 은행은 기초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신용장은 기초계약과 별개라는 독립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⁴⁾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은 그것이 서류거래라는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은행은 서류에만 관여하고 사실관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⁵⁾ 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사실관계 조차도 관여하지 않는다.⁶⁾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한다고 최초로 규정한 것은 UCP500이다.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초기 판례인 *Banque de l'Indochine 대 JH Rayner(Mincing Lane) 사건*⁷⁾에서 Parker J. 판사는 동맹선사의 선박에 화물이 선적될 것을 요구한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그것을 표시한 서류 제시 여부를 은행이 심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서류적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신용장 요구조건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당사자에게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⁸⁾ UCP 500 제13조 c항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UCP500 제13조 c항은 신용장거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수익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비서류적 조건을 대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즉 개설은행에 대한 서류의 제시 없이 수익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비서류적 조건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기술한 *Banque de l'Indochine 대 JH Rayner*사건에서는 신용장에서 화물이 동맹선사의 선박에 적재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은행은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신용장에 UCP500 또는 UCP600이 적용되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다.⁹⁾

3) Katherine A. Barski,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41, Loyola University, 1996, p.746.

4) Janis Penton Soshuk, "The Consequence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p.42.

5) *Banque de l'Indochine v. JH Rayner(Mincing Lane) Ltd* (1983) QB 711,719.

6) Nelson Enoncho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of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80.

7) (1983) QB 711.

8) Peter Elling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 238.

9) Ellinger and Dora, *op.cit.* p.239와 Richard King, *Gutteridge &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Europa Publication Ltd., 2001, p. 193.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은행위원회는 1994년 UCP500 제13조 c항에 대한 ICC Position Paper No.3을 발행하여 신용장의 성격과 기능을 침해하는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고 하였다. ICC Position Paper No.3에서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비서류적 조건도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명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UCP500 제13조 c항은 생각만큼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을 기재하는 관행을 없애지 못하였다.¹⁰⁾

UCP600 제1조에서는 UCP500의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과 유사한 표현으로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면(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이 신용장통일규칙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은 그것의 신용장거래에서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중요할수록 법원은 나중에 기술할 외 환은행사건에서처럼 UCP600 제14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한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수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UCP600의 수정과 배제가 반드시 신용장에 그것에 대한 명백한 배제 문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UCP600에서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가 신용장의 다른 곳에서 요구되었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¹¹⁾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의 요구서류에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¹²⁾ 즉 UCP600 제14조 h항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14조 d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¹³⁾ 즉 신용장에서 요구된 다른 서류에 비서류적 조건과 저촉된 사항이 기재되면 이것은 하자가 된다.

10) 이 조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다음의 판결에서 실패하였다.

Credit Agricole Indosuez 대 Generale Bank and Seco Steel Trading Inc. and Considar Inc (2000) 1 Lloyd's Rep 123
Kumagai-Zenecon Construction Ltd I(in Iiq) v Arab Bank plc (1997) 2 SLR 805 aff'd on appeal (1997) 3 SRL 770;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SRL565.

11) ICC, Commentary on UCP600, 2007, p.66.

12) ISBP745 A25.

13) The view of the Banking Commission is that sub-article 14 (h) is not absolute and is qualified by the content of sub-article 14 (d). (ICC Official Opinion R.613/TA644 rev. under UCP600)

Ⅲ. 판례 분석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는 신용장과 관련된 판례로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사건¹⁴⁾과 Mizuho Corporate Bank Ltd. v. Cho Hung Bank¹⁵⁾이 있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은 다르나 개설신청인이 동일하여 신용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전자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겠다. 다음으로 ICC DOCDEX에서 결정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1.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신용장에서 한국의환은행 무역센터지점이 신용장 개설은행이고 Standard Chartered Bank(이하에서는 SCB로 부름)가 매입은행 겸 확인은행이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신용장이 관련되어 있다. 외환은행은 SCB가 송부한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SCB는 외환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싱가포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한국 수입상이 암스테르담의 수출상으로부터 경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 신용장은 UCP 500이 적용되는데 신용장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용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번호 M06M8310NS00032

50: Applicant	Petaco Petroleum Inc.
59: Beneficiary	Trafigura Beheer BV Amsterdam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800,0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10/10
41D: 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42C: Draft at	Sight

14) [2006] SRL 565, 577.

15) [2004] SLR 67.

42D: Drawee Korea Exchange Bank
World Trade Center Branch

45A: Description of goods Origin: Japan
and/or service Gas oil 26,000 BBL +/- 10 pct
Price term: CFR any port(s) in South Korea

47A: Additional conditions Late presentation B/L acceptable

Price: The price in US dollars per barrel based on the quantity as determined under clause 12 of the contract shall be on a ex tank price at Pyongtaek, Korea Basis shall be equal to the average of the mean quotation published in the Platt's Asia Pacific/Arabian Gulf Marketscan for gas oil reg 0.5 pct quotations under the heading Singapore plus a premium of US dollars 3.38 per US BBL.

- A. Availability by negotiation at sight against following documents.
 - Seller's commercial invoice(telex/telex acceptable)
 - Independent inspector's quantity report at load port(telex/fax acceptable)
 - Copy of seller's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product to Petaco(telex/fax copy acceptable)
 - Photo copy B/L (telex/telex acceptable)
 - E. The amount of this letter of credit shall automatically fluctuate to cover any increase/decrease according to the price clause without further amendment to this credit.
 - J. Documents showing alterations without approval stamp or initials are acceptable.
-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May add

두 번째 신용장(M06M8310NS00064)은 첫 번째 신용장과 상품수량과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였다. SCB는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였다. 수입상인 Petaco는 2003년 후반기에 도산하여,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SCB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고 2003년 12월 16일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였다. 2003년 12월 27일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은 매입은행이 제시한 서류에 하자(discrepancies)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거절을 SCB에 통지하였다. 2003년 12월 29일, SCB는 개설은행의 하자 주장이 부당하다고 개설은행 앞으로 통지하였다. 같은 날 SCB는 자신의 서류 제시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

으면서 서류를 다시 제시하였다. 다시 제시된 서류에서는 개설은행이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삭제된 매도인의 수권서류 사본(copy of the seller's authorisation)이 포함되었다. 개설은행은 다시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서류도 반송하지 않았다.

2) 재판의 경과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용장에서 신용장금액의 +/- 10%편차를 허용하였는데 수익자가 oil fluctuation clause에 따라 신용장금액의 10% 상한 편차를 초과하여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① 개설은행의 주장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이 제시한 서류의 하자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철회되었지만 "amount overdraw"이라는 하자 주장은 계속되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32B와 39A에 표시된 대로 신용장금액은 \$800,000이고, 여기에 +/- 10%의 편차가 허용되므로 환어음은 \$720,000- \$880,000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야 하나, 수익자의 환어음 발행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여 하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에스컬레이션조항이 32B와 39A보다 우선 적용되면 신용장은 백지수표(blank cheque)와 같아진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개설은행은 UCP500 제13조 c항¹⁶⁾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47A의 추가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모든 하자가 수정되지 않고 단 한 가지 하자만 수정된 하자가 있는 서류를 다시 제시하였으므로(매입은행은 다시 제시한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매입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UCP500 제13조와 제14조가 적용될 수 없어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서류 재제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6) UCP500 제13조 c항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② 매입은행의 주장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에스컬레이션조항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조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신용장에 에스컬레이션조항을 삽입한 의도를 좌절시키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장에서 경유가격을 고정시키기 보다는 참조가격에 링크시키는 것이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SCB는 32B와 39A에 표시된 +/- 10% 편차한도는 45A에 표시된 경유 선적 수량 편차허용 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Origin: Japan Gas oil 26,000 BBL +/- 10 pct
---	--

SCB는 추가조건 E는 경유가격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32B와 39A의 신용장 한도금액 조건변경 없이 환어음을 초과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CB는 개설은행이 자신이 다시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UCP500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SCB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the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Reference R328 - 1998/99에 기술된 “첫 번째 제시 또는 수정된 서류에 근거한 제시이든지(whether the documents are a first presentation or a presentation on the basis of corrected documents)”를 인용하였다. 즉 두 번째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도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 후 상당기간 이내에 매입은행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

제2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매입은행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① 환어음 초과발행

신용장 32B와 39A의 \$800,000 +/- 10%는 그것 자체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신용장 전체를 보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항과 추가조건 E의 자동변동조항(automatic fluctuation clause)은 상호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은 추가조건 E를 32B와 39A보다 우선 적용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개설은행은 에스컬레이션조항이 32B와 39A보다 우선 적용되면 신용장은 백지수표와 같아진다고 항변하였는데 재판부는 그 항변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용장금액 증가는 원유 가격증가만큼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원유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이 에스컬레이션조항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신용장조건이 불명확하면 매입은행은 비록 다른 해석이 더 선호된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Credit Agricole Indosuez v. Muslim Commercial Bank Ltd [2000] 1 Lloyd's Rep 275).

UCP 500 제1조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의 모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UCP 500의 특정조항이 신용장에 적용 배제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만 그 특정조항이 적용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용장에 명백한 조건(express term)을 설정하면 UCP 500의 특정조항이 적용 배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신용장에 가격조건과 에스컬레이션조항이 없다면 신용장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유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참조가격에 따라 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록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UCP500 제13조 c항이 적용되어 무시되기 보다는 두 개의 명백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Kumagai-Zenecon Construction Pte Ltd v Arab Bank plc* 사건¹⁷⁾에서 이미 적용되었다.

Judith Prakash는 그녀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¹⁸⁾

“UCP 500의 각 조항이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이 적용된다고만 표시하고 있다. 계약의 명백한 조건은 참조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계약구성에 잘 알려진 원칙이다.”

UCP500 제13조 c항은 서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조건이 있을 때 그러한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서류가 비서류적 조건을 충족시키느냐를 은행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선호되었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규정되게 된 것이다.

17) [1997] 2 SLR 805 aff'd on appeal [1997] 3 SLR 770.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은 Wunnicke, et al(2007)의 pp. 2-30~ 2-34를 참조하시오.

18) 그녀는 판결문에서 판결의 근거로서 Kim Lewis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Sweet & Maxwell, 3rd Ed, 2004을 인용하였다. 198쪽에는 “계약을 모든 부분은 가능한 한 유효하여야 하며 계약의 어떤 부분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않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3쪽에서는 “ 계약의 각 조건은 각각 별개로 해석되어서는 않되며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UCP 500 초안그룹(drafting group) 위원장인 Charles del Busto의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Charles del Busto ed) (ICC Publication, 1993) 43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용장을 적절하게 발행할 의무는 개설신청인과 개설은행에게 있다. 그들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인과 개설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UCP500 제13조 c항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주장하거나 개설은행이 개설신청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UCP500 13조 c항을 주장하면서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UCP500 13조 c항 정신을 위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②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권리 상실

제2심 법원은 개설은행이 다시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UCP500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SCB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UCP500 제13조와 제14조는 서류의 첫 번째 제시와 두 번째 제시에 대하여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있다. SCB의 주장을 옹호하는 판례는 Evans J 의 *Floating Dock Ltd v The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¹⁹⁾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서류심사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는 매입은행인 SCB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에 재판부는 동의하였다. UCP500 제15조에서는 은행은 송하인, 운송인 등 관련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4) 평석

필자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

① 에스컬레이션 조항

원유수입신용장에서는 조건변경 없이 에스컬레이션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용장금액을 증감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개설은행은 과거에 원유수입신용장에 이와 같은 조항을

19) [1986] 1 Lloyd's Rep 65 at 80.

20) UCP600 제34에서 은행의 면책규정으로 이와 동일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조항과 관련되어 이 사건 이전에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또한 현재에도 여전히 원유수입신용장에 이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고 있다.

신용장 추가조건인 에스컬레이션조항이 신용장금액의 10% 과부족조건에 우선한다. 신용장금액의 10% 과부족조건은 선적되는 경유 수량의 편차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용장전문가²¹⁾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 한다.

② 지급거절의 배경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후반에 개설신청인이 도산하였기 때문이다. 개설은행이 두 신용장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없어서,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를 발견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은 원유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인이 지급불능으로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신용장대금 대지급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서류상 근거가 없는 하자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이 제기한 하자 중 타당한 것이 전혀 없었다.

예컨대 외환은행이 제기한 하자 중 하나는 환어음에 “bill of exchange”라는 표시가 없는데, “International Draft Law”에 따라 “bill of exchange”라는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특별하게 “bill of exchange”라는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²²⁾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여 사소한 하자를 가지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것은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신용장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자제하여야 한다.

③ 재제시 서류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시하는 당사자는 선의(good faith)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매입은행은 이미 하자(개설은행이 이전에 하자라고 주장한 것)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서류를 다시 제시한 것은 악의(bad faith)에 해당되므로 UCP500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서류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개설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입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서류를 재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개설은행이 재제시된 서

21) Ian Teo와 Chee Seng Soh은 2006년 발간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의 LC CASE SUMMARIES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22) DOCDEX Decision No. 255에서는 제시된 환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즉 만기, 금액, 지급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환어음에 “bill of exchange”란 명칭이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류에 대하여 반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혀 없다. ICC 은행위원회의 UCP500 제14조 (d)(i)에 대한 공식의견²³⁾에서 “서류가 처음 제시되었건, 수정된 서류를 제시하였건”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의무에 대한 UCP500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개설은행은 재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거절하기로 하였다면 합리적인 시간²⁴⁾ 내에 서류 제시자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개설은행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UCP500 제14조 e항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UCP600 제16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DOCDEX 결정 238

1) 사건의 개요

개설은행은 다음의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여부를 DOCDEX에 질문하였다.

- ① Overdrawn
- ② Early shipment prior to L/C issue date
- ③ Receiver on LOI differs from L/C terms (applicant i/o Respondent)
- ④ Fraud by dual issuance of LOI

UCP 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으로 확인 추가가 허용된 것으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었다.

“One original and one copy of signed commercial invoice

Full set of 3/3 original plus 3 copies of bill of lading made out or endors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marked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수익자가 위의 서류를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제시할 수 없다면 다음의 서류가 제시되어도 된다.

Seller's commercial invoice

Seller's letter of indemnity.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이 있었다.

Telex invoice and LOI acceptable.“

2003년 10월 24일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송장과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LOI(letter of indemnity)가 포함된 텔렉스 메시지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텔렉스 메시지에서 매입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른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

23) ICC Official Opinion R328 under UCP500.

24) UCP500에서는 7영업일, UCP600에서는 5영업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분석

① 하자 1. Overdrawn

신용장금액은 \$200,000인데 상업송장금액은 \$233,662.64이었다. 상품수량은 신용장에서 900ton +/-10%로 명시되었는데 송장수량은 990ton 이었다. 송장수량은 과부족허용한도 범위 내이다. 신용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이 있었다.

"The price per barrel on Bill of Lading quantity shall be the average of the mean of Platt's Asia Pacific/Arab Gulf Market scan quotations for gasoil reg 0.5 pct appearing under the heading 'Singapore' during the period 01-31 July 2003 plus a premium of USD 2.25 per barrel."

"The amount of this Letter of Credit shall automatically fluctuate to cover any increase/decrease according to the price clause without further amendment to this credit."

② 하자 2. Early shipment prior to L/C issue date

신용장에서 선적기일은 2003년 8월 18일이고, 신용장 발행일 이전 선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비록 운송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적일자를 LOI에 나타난 일자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신용장은 선적일자를 LOI일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③ 하자 3. Receiver on LOI differs from L/C terms (applicant i/o respondent)

신용장에서는 선하증권 대신에 LOI가 제시될 경우 LOI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요구조건도 없었다. LOI는 수입상 앞으로 발행되었다.

④ 하자 4. Fraud by dual issuance of LOI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LOI는 수입상 앞으로 발행되었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을 통보한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수정된 LOI를 다시 제시하였다. 매입은행이 수정 LOI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그것은 첫 번째 제시된 LOI 대신에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매입은행은 수정 LOI를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에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3) 결정

① Overdrawn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신용장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i) the amount of the credit: USD 200.000,00 +/- 10 pct. (field 32B + 39A)
- ii) the clause relating to fluctuation of the credit amount without an amendment (stated in field 47A, point 6).

10%의 과부족 편차는 인도되는 경유 수량과 신용장금액에 대한 것으로 송장은 이것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송장은 두 번째 조건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였다. 세 명의 DOCDEX 전문가가는 두 번째 조건은 10%의 최대편차를 초과하는 환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하였다.

② Early shipment prior to L/C issue date

신용장에서는 최종 선적기일만 명시하고 있고, 최초 선적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UCP 500(UCP 600도 마찬가지 임)에서 신용장 발행일자 이전의 선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UCP 500 제22조는 신용장 발행일 이전의 일자를 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시간 이전에 제시되면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Receiver on LOI differs from L/C terms (Applicant i/o Respondent)

UCP 500 제21조에 따르면 신용장 또는 통일규칙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당사자도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신용장에서는 LOI가 누구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UCP 500 제21조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선하증권 원본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유무역에서 사용되는 LOI는 화물의 명백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입상 앞으로 발행되는 국제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용장의 다른 조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개설은행은 관련 무역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과 그것과 관련된 위험을 알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조건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④ Fraud by dual issuance of LOI

사기는 UCP 500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익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법원이 injunction 결정을 내려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을 금지한다. UCP 500에서 신용장은 대금지급 수단으로 “사기에 의한 청구”가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⑤ 결론

제시서류는 하자가 없으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 지정전문가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5) UCP600 제14조 f항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에서 서류 발행자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평석

필자는 DOCDEX 결정에 동의한다. 이 사건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대하여는 앞의 외환은행 사건과 동일하다. DOCDEX는 ICC 은행위원회가 만든 전문가분쟁해결기구로 여기서도 앞의 외환은행 사건의 에스컬레이션조항에 대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oil fluctuation clause가 있는 신용장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결정되었다.²⁶⁾ 이 사건이 외환은행 사건과 다른 점은 선하증권 대신에 LOI가 제시되었으며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LOI는 최초의 수출상과 최종 수입상간에 25명 이상의 중간상이 게재하는 원유거래의 특성상 허용되는 서류이다. 많은 중간상이 게재함으로써 이전 수익자가 다음 개설신청인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가 선하증권을 입수하면 즉시 개설신청인에게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인 LOI를 발행하는 관행이 있다.²⁷⁾

IV. 시사점

1.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위험성

Oil fluctuation clause와 같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신용장조건으로 삽입되면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이 도산한 경우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지급(代支給)을 하여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장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은행은 이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지급의무금액이 개설시에 결정할 수 없는 신용장 유효기간동안의 M2M(market-to market)에서의 가격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에 최대채무금액을 가격결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객의 신용한도를 초과하게 할 수 있고, 내부통제목적으로 고객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한다.²⁸⁾ 이와 같은 조건의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의 편차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추가조건으로 Oil fluctuation clause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금액의 최대한도가 얼마라는 것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러나 원유거래에서는 수입상보다 수출상의 지위가 높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최대한도가 설정된 신용장을 수출상이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6) DOCDEX Decision No. 243, 244, 248, 255.

27)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2011, p.417.

28) Peter Sproston, Commodity Prices, Escalation Clauses and L/Cs,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7 No.1, 2011.

29) Sproston, op.cit.

2.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UCP600의 개정방향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나 상거래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계약의 세계에서는 본질적이다. 특정 당사자의 의사를 만족시키는 것이 신용장시스템을 붕괴시킨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크다. 그러므로 신용장에서 독립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반면에 기초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한다는 UCP600의 규정은 계약법의 기본적인 교의와 모순되는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협상된 조건은 기본조건에 우선되어야 한다.³⁰⁾ 기본조건이 개별적으로 협상된 조건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독일법³¹⁾, 국제상업계약에 대한 UNIDROIT 원칙³²⁾과 유럽계약법(PRCL)³³⁾에서 규정하고 있다.

Nielsen(2013)은 비서류적 조건은 개설신청인이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개설신청서의 비서류적 조건과 그에 따른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UCP600의 표준적 조건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UCP600 제14조 h항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법률가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이러한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았다.³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의도를 중요시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적용한다.³⁵⁾

UCC 제5-108(g)에서는 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해야 된다는 UCP 규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UCC에 대한 해설(commentator)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Where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central and fundamental to the issuer’s obligation (as for example a condition that would require the issuer to determine in fact whether the beneficiary had performed the underlying contract or whether the applicant had defaulted) their inclusion may remove the undertaking from the scope of Article 5 entirely.”

앞의 접근방법은 비서류적 조건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에 비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훨씬 더 잘 고려하고 있다.³⁶⁾ 모든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에 구속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30) Nicolai Nielsen,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Problems with UCP600 Article 14(h), Documentary Credit World, November/December 2013, p.47.

31) §305 B/b BGB, the German Civil Code.

32) UNIDROIT Principle Article 2.1.2.1.

33) Article 5:104 PECL.

34) Nielsen, op.cit.

35)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대리인이 있고, 지시가 모호할 때 특히 적합하다.(Agasha Mugaha, The Law of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Federation Press, 2003, p.112.)

36) Matti S. Kurlala,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33.

므로 법원도 신용장거래가 비서류적 조건에 구속되도록 판결하여야 될 것이다.³⁷⁾

이상적인 해결책은 UCC 해설(commentators)에서 표현된 의도를 UCP600을 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즉 ISP98³⁸⁾이나 URDG758³⁹⁾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나 개설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UCP600으로 개정될 때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UCP600은 UCP500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쳤다.

V. 결 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하여 우발채무를 진다. 그러나 신용장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장을 개설할 때 우발채무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명백한 조건에 해당되어 신용장금액의 한도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법원의 판결과 ICC DOCEDX 결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되어 무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과 ICC DOCEDX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CP500과 UCP600에서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통일규칙은 ICC라는 민간경제단체가 만든 규칙이므로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장 실무자 중에는 신용장거래에 신용장통일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조항이 신용장거래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될 수도 있다.

특히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UCP500과 UCP600의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UCC 해설(commentators)에서 표현된 의도를 UCP600을 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즉 ISP98⁴⁰⁾이나 URDG758⁴¹⁾과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객관적 지표나 개설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서류적 조건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UCP600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보증신용장이나

37) James E.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0, p.649.

38) ISP78 4.11조.

39) URDG 758 제7조.

40) ISP78 4.11조.

41) URDG 758 제7조.

청구보증서에 적용되는 ISP98이나 URDG758의 규정이 UCP600이 적용되는 상업신용장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상업신용장과 청구보증서 및 보증신용장은 관행이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점과 독립추상성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세 가지 통일 규칙의 통합이 ICC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개설은행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대금지급 수단으로서의 신용장 사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김동윤,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ICC 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김선국,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년 5월 30일 선고, 98다 47443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1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 남풍우·한상현,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03.
- 박세운·최장우,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서백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이대우,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고찰- 대구은행 대 한일은행 사건”, 「국제상학」, 제22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이상훈,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중재연구」, 제15권 3호, 한국중재학회, 2005.
- Balasingham, Arjuna, “LOIs and How Bankers Treat Them,”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 7 No.4, 2001.
- Barski, Katherine A.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 41, Loyola University, 1996.
- Byrne, James E., “The Four Stages in the Electrification of Letters of Credit,” George Mas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Vol.3 No.2, Spring 2012, Byrne, James 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0.
- Collyer, Gary,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2011.
-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Enonchong, Nelson, The Independence Principle of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ICC, Commentary on UCP600, 2007.
- Kozolchyk, Boris, “Is It Time to Standardize LOI Practic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 9 No.1, 2003.
- Kurlala, Matti S.,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ewison, Kim,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Sweet & Maxwell, 2004.
- Mugaha, Agasha, The Law of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Federation Press, 2003.
- Murray, Carole, David Holloway and Daren Timson-hunt, Schmitthoff’s Export Trade, Sweet & Maxwell, 2007.
- Nielsen, Nicolai,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Problems with UCP600 Article 14(h),” Documentary Credit World, November/December 2013.
- Soshuk, Janis Penton “The Consequence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 Sproston, Peter, “Commodity Prices, Escalation Clauses and L/Cs,”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7 No.1, 2011.
- Wunnicke, Brooke, Diane B. Wunnicke and Paul 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Aspen Law & Business, 2007.
- www.dcpprofessional.com

ABSTRACT

Price Escalation Clause of Letter of Credit

Sae-Woon Park*

The purpose of price escalation clauses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L/C value subject to external pricing mechanisms. This will be found *inter alia* in metals and oil products transactions.

Such a clause gives rise to a question. That is, whether it is enforceable or whether it constitutes a letter of credit. The problem is what to reference to a source outside the context of a letter of credit constitutes a non-documentary condition rendering the undertaking something other than a letter of credit. Reference to an objective and readily available index is not something that renders the undertaking obscure and is not "non-documentary in the sense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n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data.

The possible solution is that not every non-documentary condition will be disregarded. For example, an index specified in the credit will not be disregarded as stipulated in ISP98 and URDG758. If a non-documentary is "central and fundamental", it seems that the parties intended a dependent payment obligations.

The most common means of overcoming this conflicts of interests is to issue an instrument incorporating an escalation clause, but capping the bank's maximum payment obligation.

Key Words : Price Escalation Clause, Oil Fluctuation Clause, Nondocumentary Condition, Overdrawn

*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ir, ICC Korea Banking Commission